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 강기윤·김희국·이 용

윤한홍ㆍ이명수ㆍ윤영석

최형두 • 윤재옥 • 구자근

권명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공동육아나눔터"를 "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 ① 국가	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 ①
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	
관련 정보교류, 부모교육 등을	
위하여 <u>공동육아나눔터</u> 를 설치	<u>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</u>
• 운영할 수 있다.	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
	아나눔터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